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287188 판결 [계약금반환등청구]

재판경과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28718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2544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가합20240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주식회사 B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목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1. 변호사 김의환, 이현수, 강주혁

2. 변호사 양희묵

판결 선고2019. 3. 28.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25445 판결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N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참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궁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0257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의 이행기는 2015. 6. 30.의 경과와 사업인허가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 도래한다고 보고, '피고의 2015.

7. 6.자 선행 해제 당시 잔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사업인허가 승인에 관한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는 사업인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의 잔금지급거절은 이행거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2015. 7. 6.자 선행 해제는 부적법하고, 원고의 2016. 3. 25.자 후행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의 이행기는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인허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연장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사업인허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피고가 사업인허가 승인에 관한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인허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선행 해제 당시 잔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피고의 선행 해제 당시 잔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피고의 선행 해제가 부적법하고 원고의 후행 해제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법률행위와 처분문서의 해석, 이행거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예정액을 500,000,000원으로 감액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대법관이동원